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4-4호

「강릉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강릉시 의회의장

강릉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자녀를 출산·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로 이뤄진 가정에 대하여 학업, 출산, 양육, 보건 등의 지원으로 청소년부모가정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의 범위(안 제4조~제5조)

라. 중복지원의 제한 및 지원중단 및 환수(안 제6조~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033-640-4033)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
- 이메일: lys2941a@korea.kr
- 팩 스: 033-640-4070

- 붙임 1. 강릉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1]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부모”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 한부모”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의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부모가정”이란 자녀를 임신 중이거나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 또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소년부모가정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청소년부모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
2. 청소년부모가정의 학업 및 교육 지원
3. 청소년부모가정의 보건 및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
4. 자녀의 양육·교육 지원
5. 청소년부모가정의 주거, 자립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부모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지원과 중복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부모가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법 규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개정안 내용	의 건	비 고